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650지구” (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Rotary International District 3650, Inc.” 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필운동 254 신동아 블루아 광화문의꿈 2층 203호 (우)110-044에 둔다.

제 3 조 (목적)

법인은 전세계 로타리클럽의 연합체인 국제로타리의 산하단체로서 로타리 강령에 의거 전세계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및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 불우이웃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를 실현함으로써 초아의 봉사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 5 조 (사업)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저소득자, 불우이웃들(장애인, 고아원, 난치병어린이, 독거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사업

- ② 회원상호간 사회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환과 연구에 관한 사업
- ③ 회원 상호간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 발생 시 이를 구조하는 사업
- ④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회봉사사업
- ⑤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로타리클럽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 ⑥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인터랙트 및 로타랙트클럽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
- ⑦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조사 및 계몽과 홍보에 관한 사업
- ⑧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비영리단체)

법인은 비영리·비 정치단체로서 그 사원이나 이사, 임원들에게 어떠한 배당금이나, 단체의 자금, 혹은 자산의 일부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 원

제 7 조 (사원의 구성)

- (1) 법인의 사원은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정관 및 세칙의 규정에 의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소속 로타리클럽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2) 법인의 사원은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의거하여 로타리클럽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 (3)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의거하여 지구에 로타리클럽이 추가될 경우 그 클럽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법인의 사원이 되며 기존 로타리클럽의 자격이 종료될 경우 그 클럽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법인의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로타리클럽의 회장은 당해 로타리클럽의 대표권을 갖는다.

제 8 조 (사원의 의무와 권리)

- (1) 법인의 모든 사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의 출석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 2.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의 제출과 심의 요구
 - 3. 법인이 수집,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의 이용
 - 4. 법인의 사업 및 각종 회의와 행사에의 참가·참여
- (2) 법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등

제 9 조 (임원 등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인
2. 전임총재 5인
3. 차기 총재 1인
4. 사무총장 1인
5. 재무이사 1인
6. 이사 (총재, 전임총재, 차기총재, 사무총장 및 재무이사를 포함한다.) 9인
7. 감사 2인

(2) 전 항의 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다음의 보좌역을 둘 수 있다.

1. 총재보좌역 15인 이내
2. 지구위원회위원장 15인 이내
3. 사무부총장 5인 이내
4. 소속 로타리클럽 회장 각 1인

제 10 조 (임원 등의 선출)

(1) 총재는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따라 선출된다. 선출된 총재는 임기개시 1년 전부터 임기개시까지는 차기 총재라 칭하고, 그 직전 1년 동안은 차 차기 총재라 칭한다. 임기 만료된 총재는 임기종료일부터 1년간은 직전총재라 칭한다.

(2) 총재보좌역, 지구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및 사무부총장은 그와 임기를 같이 할 총재가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로타리클럽의 회장은 클럽정관 및 세칙에 따라 클럽회원이 선출한다.

(5) 법인의 모든 임원은 지구에 소속된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선출 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 각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명 또는 선출한다. 후임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 조 (총재, 차기 총재, 총재보좌역 및 지구위원회위원장의 직무)

(1) 총재는 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로타리의 임원으로서 동 이사회의 전반적인 통제와 감독하에 활동하며, 국제로타리 3650지구 내 로타리클럽들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감독업무를 통하여 로타리클럽들이 로타리 강령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의 추진
2. 신생 로타리클럽의 결성과 지도.

3. 기존 로타리클럽의 강화와 지도
 4. 로타리클럽간의 친목 도모
 5. 임기 중 각 로타리클럽의 방문
 6. 법인의 각종 회의의 주재
 7. 지구대회의 계획 및 주관
 8.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과 지도감독
 9. 업무 및 재정보고
 10. 기타 유관기관이 요구하는 보고 및 과업의 수행
- (2) 차기 총재는 총재 유고 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재보좌역은 총재를 보좌하여 총재가 지정하는 지역내의 로타리 클럽들이 효율적인 클럽이 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기 총재와 협력하여 지구목표를 설정
 2. 지구리더들과 협력하여 지구 목표 달성 전략의 계획 및 집행
 3. 차기 총재가 효율적인 지구지도부 팀을 구성하도록 협력
 4. 각종 지구 행사에 많은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 (4) 지구위원회 위원장들은 소관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차기연도 지구목표를 설정하는 차기 총재를 지원한다.
 2. 로타리 클럽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3. 국제로타리 및 로타리 해당위원회 및 리소스 그룹과 협력한다.
 4. 위원회 활동과 현황을 모니터하여 지구 총재에게 보고한다.
 5. 지구 및 국제로타리 자원에 대해 클럽지도자들을 교육시킨다.
 6. 클럽과 정기적인 연락을 하는 총재보좌역과 협조한다.

제 12 조 (사무총장, 재무이사 및 사무부총장의 직무)

- (1) 사무총장은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사무부총장들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지도 감독한다.
- (2) 재무이사는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운영에 관한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 (3) 사무부총장들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일반업무를 보조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각 호의 감사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일

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 14 조 (로타리클럽 회장의 직무)

로타리클럽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고, 클럽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등)

- (1) 총재를 포함한 직전총재와 차상위 4인의 전총재 등(6인) 및 신임되는 차기총재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 재무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총재보좌역, 지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부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에 개시되고 익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 (3) 총재와 차기 총재는 연임할 수 없다.
- (4) 전임총재는 직전총재를 포함한 차 상위 4인의 전임총재로 한다
- (5) 총재보좌역, 지구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및 사무부총장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 (6)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7) 로타리클럽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대표권의 제한) 총재 이외의 임원은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8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총재가 소집하며, 지구운영현안에 대해 자문을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총재가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제 13조 제 4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사원 4분의 1이상이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한 때

(4) 총회의 소집은 부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사원 또는 지구 소속 로타리클럽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지구소속 로타리클럽의 회장은 당해 로타리클럽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수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한 자, 또는 소속 로타리클럽의 회장이 출석한 경우에는 당해 로타리클럽회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 5 장 지구 임원 회의

제 22 조 (지구 임원 회의)

(1) 지구임원회의는 제 9 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지구 임원회의는 총재가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1. 지구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지구사업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연차총회에 부의할 안건
5. 기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총재, 전임총재(5인), 차기 총재, 사무총장 및 재무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법인의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3) 감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총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이사회 의 소집)

(1)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이사회 의 업무와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건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9. 우수 로타리클럽과 로타리회원에 대한 포상 및 외국 로타리회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10. 징계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 의 업무 또는 의결사항으로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제 26 조 (이사회 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정)

법인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28 조 (재산의 구분)

- (1)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상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기본재산목록으로 기재된 재산
 - 2. 부동산
 - 3.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 29 조 (자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국제로타리 회계연도와 같으며 매년 7월 1일에 개시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1 조 (예산안의 제출 및 결산 보고)

- (1) 차기 총재는 총재, 차 차기 총재 및 차기의 총재보좌역으로 지명된 자와 협의를 거쳐 매년 4월 이전에 차기의 지구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2) 결산은 회계연도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사무국

제 32 조 (사무국)

- (1)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에 약간 명의 상임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상임 직원에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 33 조 (포상)

- (1) 법인은 로타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로타리클럽과 클럽에 소속된 로타리회원을 이사회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 (2) 법인은 지구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외국 로타리회원을 이사회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4 조 (징계)

(1) 지구 소속 로타리클럽, 지구 소속 로타리클럽의 회원, 법인의 임원, 또는 법인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로타리클럽, 법인의 사원, 법인의 임원, 또는 법인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국제로타리의 정관, 세칙 또는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
2. 로타리 또는 지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로타리 또는 지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위 제 (1)항의 징계는 법인의 총재보좌역, 사무총장, 재무이사, 지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을 포함한다.

제 10 장 보칙

제 35 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정관 제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6 조 (해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결의가 있거나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해산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은 해산하며, 즉시 그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를 개시한다. 총재는 법인의 해산 결정을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통보하고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해산절차의 완료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38 조 (공고 사항 및 공고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재월신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이사회가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 39 조 (국제로타리 정관 등 규정의 우선적 효력)

이 정관의 규정이나 법인의 결정이 국제로타리 정관이나 세칙 또는 방침과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국제로타리 정관이나 세칙 또는 방침이 법인의 정관이나 결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40조 (운영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지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법인 설립 당시의 총재, 차기 총재 및 직전총재)

(1) 법인 설립 당시의 총재는 운영석으로 하고 그 임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010. 6. 30. 까지로 한다.

(2) 법인 설립 당시의 차기 총재는 박영구로 하고 차기 총재로서의 임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010. 6. 30. 까지로 하며 총재로서의 임기는 2010. 7. 1. 부터 2011. 6. 30. 까지로 한다.

(3) 법인 설립 당시의 직전총재는 장성현으로 하고 이사로서의 임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010. 6. 30. 까지로 한다.

(4) 법인 설립 당시의 차차기 총재는 문덕환으로 하고 차차기 총재로서의 임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010. 6. 30. 까지로 한다. 차기 총재로서의 임기는 2010. 7. 1. 부터 2011. 6. 30. 까지로 하며, 총재로서의 임기는 2011. 7. 1. 부터 2012. 6. 30. 까지로 한다.

(붙임)

재산 목록

(사)국제로타리 3650 지구

2010년 12월 29일 현재

건 물

₩610,000,000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54

신동아블루아광화문의꿈 2층 203호>